|  |  |  |
| --- | --- | --- |
| **수입 사료 및 사료첨가제 등기** **관리방법**농법부 령 2014년 제2호《수입 사료 및 사료첨가제 등기 관리방법》이 2013년 12월 27일 농업부 제11차 상무회의 심의를 통과하였기에 이를 공포하며,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농업부가 2000년 8월 17일 공포하고 2004년 7월 1일 개정하였던 《수입 사료 및 사료첨가제 등기 관리방법》은 이와 동시에 폐지한다.부장 한창부2014년 1월 13일 **제1조** 수입 사료, 사료첨가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동물제품 품질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사료 및 사료첨가제 관리조례》에 근거하여 본 방법을 제정한다.**제2조** 본 방법에서 사료라 함은 공업화 가공 및 제조를 통해 동물의 식용으로 제공하는 제품을 가리키며, 여기에는 단일사료, 첨가제 혼합사료, 농축사료, 배합사료 및 농후사료 보충제가 포함된다.본 방법에서 사료첨가제라 함은 사료의 가공, 제조, 사용 과정에서 첨가한 소량 또는 미량의 물질을 가리키며, 여기에는 영양성 사료첨가제와 일반 사료첨가제가 포함된다. **제3조** 해외기업이 처음으로 중국에 사료, 사료첨가제를 수출하는 경우, 농업부에 수입등기를 신청하여 사료 및 사료첨가제 수입등기증을 취득하여야 한다. 수입등기증을 취득하지 않고는 중국 국내에서 판매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제4조** 해외기업이 수입등기를 신청할 때는, 반드시 중국 경내의 대리기관에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제5조** 수입등기를 신청하는 사료, 사료첨가제는 생산지와 중국의 관련 법령, 기술규범 요건에 부합하여야 한다. 생산지에서 생산 및 사용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생산 및 사용이 금지된 사료와 사료첨가제는 등기를 허용하지 않는다.**제6조** 사료, 사료첨가제의 수입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농업부에 진실하고, 완전하며, 규격양식에 맞게 작성된 신청자료(중.영문 대조, 같은 서류 2부)와 샘플을 제출하여야 한다.**제7조** 신청자료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1) 사료, 사료첨가제 수입등기신청서(2) 위탁서 및 국내 대리기관의 자질 증명 : 해외기업이 자신의 중국내 상주기구에 위탁하는 경우 위탁서 원본과 《외국기업 중국상주대표기구 등기증》 복사본 제출, 국내의 기타 대리기관에 위탁하는 경우 위탁서 원본과 대리기관의 법인영업집조 복사본 제출(3) 생산지 생산 및 사용 허가에 관한 증명, 생산지 이외의 다른 국가나 지역의 등기자료, 제품 보급 및 사용현황 자료(4) 수입 사료 : 제품명, 구성성분, 물리화학적 성질, 적용 범위, 사용방법 제출; 수입 사료첨가제 : 제품명, 주요성분, 물리화학적 성질, 제품의 출처, 사용 목적, 적용 범위, 사용방법 제출(5) 생산공정, 품질 기준, 테스트방법 및 검사보고 (6) 생산지에서 사용하는 라벨, 상표 및 중문 라벨 디자인(7) 미생물제품 또는 발효제품의 경우 권위 있는 기관에서 발급한 균주(strain) 보존증명본 방법 제13조에 규정된 사료, 사료첨가제를 중국에 수출하는 경우, 추가로 아래 신청자료를 제출해야 한다.(1) 유효성분화학구조감정보고 또는 동물,식물,미생물 분류감정보고(2) 농업부 지정 테스트기관이 발급한 제품유효성평가시험보고, 안정성평가시험보고(타겟동물 내성평가보고, 독리학 안전평가보고, 신진대사 및 잔류량 평가보고 등 포함); 사료첨가제의 수입등기 신청시에는 당해 사료첨가제의 양식제품내 잔류량이 인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분석보고 제출(3) 안정성테스트보고, 환경영향보고(4) 사료제품 중 최고한도제한 기준이 있는 사료제품의 경우, 최고한도치 및 사료제품 내 유효성분 테스트방법 제출 필요**제8조** 제품 샘플은 다음 요건에 부합하여야 한다.(1) 모든 제품은 3차례에 걸쳐서, 매 차례마다 2건의 샘플을 제공하고, 매 건 마다 테스트 소요량의 5배 이상 제출(2) 필요시 관련 기준제품 또는 화학대조품 제출**제9조** 농업부는 신청 접수일로부터 10 근무일 내에 신청자료를 심사한다. 심사에 합격한 경우 신청자에게 통보하고 샘플을 농업부가 지정한 테스트기관으로 보내어 확인검사를 진행토록 한다.**제10조** 확인검사는 품질기준 심사와 샘플 검사를 포함한다. 테스트방법은 국가기준과 업종별 기준이 있는 경우는 먼저 국가기준 또는 업종별 기준을 적용하고, 국가기준과 업종별 기준이 없는 경우는 신청자가 제공한 테스트방법을 적용한다. 필요시 테스트기관은 실제 상황에 따라 테스트방법을 조정할 수 있다.테스트기관은 3개월 내에 확인검사를 완수하고, 확인검사보고를 농업부에 제출하면서 신청자에게도 사본을 송부한다.**제11조** 해외기업이 확인검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확인검사보고를 수령한 날로부터 15 근무일 이내에 재검사를 신청해야 한다.**제12조** 확인검사에 합격한 경우 농업부는 10 근무일 이내에 사료, 사료첨가제 수입등기증을 발급하고 이를 공고한다.**제13조** 수입등기신청 사료, 사료첨가제가 다음 상황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농업부는 사료, 사료첨가제 신제품 평의 절차에 따라 평가심사를 진행한다.(1) 중국에서 아직까지 사용된 적이 없으나 생산지에서는 이미 생산 및 사용허가를 받은 사료와 사료첨가제를 중국에 수출하는 경우(2) 사료첨가제의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경우(3) 사료첨가제 함량 규격이 사료첨가제 안전사용규범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단 사료첨가제와 매개(vector) 또는 희석제가 일정한 비율로 배합된 경우는 제외(4) 사료첨가제 생산공법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한 경우(5) 농업부가 사료, 사료첨가제 신제품증서를 이미 발급하였는데, 증서발급일로부터 3년이 넘도록 생산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6) 품질 안전에 리스크가 존재하는 기타 경우**제14조** 사료, 사료첨가제 수입등기증 유효기간은 5년이다.사료, 사료첨가제 수입등기증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계속 중국으로 수출되어야 하는 사료, 사료첨가제는 유효기간 만료 6개월 전에 기간연장을 신청해야 한다.**제15조** 기간연장 신청시 아래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1) 수입 사료, 사료첨가제 연장등기신청서(2) 수입등기증 복사본(3) 위탁서 및 국내 대리기관 자질증명(4) 생산지의 생산, 사용 허가 증명(5) 품질 기준, 테스트방법, 검사보고(6) 생산지에서 사용하는 라벨, 상표 및 중문 라벨 디자인**제16조** 다음 상황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기간연장 신청시 샘플을 제출하여 확인검사를 받아야 한다.(1) 관련 법령, 기술규범에 따라 제품 품질 안전검사 항목이 조정된 경우(2) 제품 테스트방법이 변경된 경우(3) 샘플 추출 검사에서 불합격 기록이 있는 경우**제17조** 수입등기증 유효기간 내에 수입 사료, 사료첨가제의 생산장소가 이전되거나 제품 품질기준, 생산공법, 사용범위 등에 변화가 발생한 경우, 새로 등기를 신청해야 한다.**제18조** 수입 사료, 사료첨가제 수입등기증 유효기간 내에 다음 상황 중 하나가 발생한 경우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한다.(1) 제품의 중문 또는 외국어 명칭이 변경된 경우(2) 신청기업 명칭이 변경된 경우(3) 생산공장 명칭이 변경된 경우(4) 생산지 주소명이 변경된 경우**제19조** 변경등기 신청시 아래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1) 수입 사료, 사료첨가제 변경등기신청서(2) 위탁서 및 국내 대리기관 자질증서(3) 수입등기증 원본(4) 변경사항 설명 및 관련 증명 문건 농업부는 변경등기 신청을 접수한 후 10 근무일 내에 변경허가 여부를 결정한다.**제20조** 수입 사료, 사료첨가제 등기 업무에 종사하는 관계기관과 종사자는 신청자가 제출한 자료 중 비밀 유지가 필요한 자료에 대해 비밀을 지켜야 한다.**제21조** 해외기업은 법에 따라 중국 경내에 판매기관을 설립하거나 조건에 부합하는 중국 경내 대리기관에 수입 사료, 사료첨가제 판매를 위탁해야 한다. 해외기업은 중국 경내에서 직접 수입 사료, 사료첨가제를 판매할 수 없다.**제22조** 해외기업은 사료, 사료첨가제 수입등기증을 취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중국 경내에 설립한 판매기관이나 위탁판매대리기관을 농업부에 등록해야 한다.위 항에 규정한 판매기관 또는 판매대리기관 변경이 발생한 경우, 1개월 이내에 농업부에 보고하여 새로 등록하여야 한다.**제23조** 수입 사료, 사료첨가제는 반드시 포장되어야 하고, 포장이 중국의 안전, 위생 관련규정에 부합되어야 하며, 중문 라벨이 부착되어야 한다.**제24조** 수입 사료, 사료첨가제가 사용 과정에서 양식 동물이나 인체 건강 또는 환경에 위해를 끼친 것으로 확인된 경우, 농업부는 이를 공고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수입등기증을 취소한다.사료, 사료첨가제 수입등기증 유효기간 내에 생산지에서 당해 사료, 사료첨가제 사용을 금지하거나 생산 및 사용 허가를 취소한 경우, 해외기업은 지체 없이 농업부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농업부는 그 수입등기증을 취소하고 이를 공고한다.**제25조** 해외기업이 자사가 중국으로 수출하는 사료, 사료첨가제가 양식 동물, 인체건강에 유해함을 발견하거나 기타 위험성을 발견한 경우, 지체 없이 중국내 판매기관이나 판매대리기관에 통지하여야 하고, 또한 농업부에게 보고해야 한다. 해외기업의 중국내 판매기관 또는 판매대리기관은 스스로 위 항에서 규정한 제품을 리콜하고, 리콜 현황을 기록하며, 판매지 사료관리부서에 보고해야 한다.리콜한 제품은 현급이상 지방정부 사료관리부서의 감독하에 무해화 처리하거나 소각한다.**제26조** 농업부와 현급이상 인민정부 사료관리부서는 수요에 따라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수입 사료, 사료첨가제에 대해 감독샘플검사를 시행해야 한다. 수입 사료, 사료첨가제 감독샘플검사 업무는 농업부 또는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사료관리부서가 지정한 관련 기술조건을 가진 기관이 수행한다. 수입 사료, 사료첨가제 감독샘플검사는 수입등기 과정 중 확인검사 단계에서 확정한 품질 기준에 따라 진행한다. **제27조** 농업부와 성급 인민정부 사료관리부서는 감독샘플검사 결과를 공포해야 한다. 또한 불량기록을 가진 해외기업 및 그 판매기관, 판매대리기관 명단을 함께 공포할 수 있다. **제28조** 수입 사료, 사료첨가제 등기업무 종사자가 본 방법이 규정한 직책을 이행하지 않거나 권한남용, 직무유기, 사익추구 등 행위를 한 경우 법에 따라 처분하고, 범죄요건이 성립되면 형사책임을 추궁한다.**제29조** 허위의 자료, 샘플을 제공하거나 기타 사기수단으로 수입등기를 신청한 경우, 농업부는 신청을 수리하지 않거나 허가를 내주지 않고, 1년 내에는 당해 해외기업과 등기대리기관의 수입등기 신청을 수리하지 않는다.허위의 자료, 샘플을 제공하거나 기타 사기수단으로 사료, 사료첨가제 수입등기증을 취득한 경우, 농업부는 이 수입등기증을 취소하고, 등기대리기관에게 5만 위안 이상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3년 내에는 이 해외기업과 등기대리기관의 수입등기 신청을 수리하지 않는다. **제30조** 기타 본 방법을 위반한 행위는 《사료 및 사료첨가제 관리조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제31조** 본 방법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농업부가 2000년 8월 17일 공포하고 2004년 7월 1일 개정한 《수입 사료 및 사료첨가제 등기 관리방법》은 이와 동시에 폐지한다. |  | **进口饲料和饲料添加剂登记管理办法**农业部令2014年第2号《进口饲料和饲料添加剂登记管理办法》业经2013年12月27日农业部第11次常务会议审议通过，现予公布，自2014年7月1日起施行。农业部2000年8月17日公布、2004年7月1日修订的《进口饲料和饲料添加剂登记管理办法》同时废止。　　　　　　　　　　　　　　　　　 部长 韩长赋2014年1月13日**第一条** 为加强进口饲料、饲料添加剂监督管理，保障动物产品质量安全，根据《饲料和饲料添加剂管理条例》，制定本办法。**第二条** 本办法所称饲料，是指经工业化加工、制作的供动物食用的产品，包括单一饲料、添加剂预混合饲料、浓缩饲料、配合饲料和精料补充料。本办法所称饲料添加剂，是指在饲料加工、制作、使用过程中添加的少量或者微量物质，包括营养性饲料添加剂和一般饲料添加剂。**第三条** 境外企业首次向中国出口饲料、饲料添加剂，应当向农业部申请进口登记，取得饲料、饲料添加剂进口登记证；未取得进口登记证的，不得在中国境内销售、使用。**第四条** 境外企业申请进口登记，应当委托中国境内代理机构办理。**第五条** 申请进口登记的饲料、饲料添加剂，应当符合生产地和中国的相关法律法规、技术规范的要求。生产地未批准生产、使用或者禁止生产、使用的饲料、饲料添加剂，不予登记。**第六条** 申请饲料、饲料添加剂进口登记，应当向农业部提交真实、完整、规范的申请资料（中英文对照，一式两份）和样品。**第七条** 申请资料包括：（一）饲料、饲料添加剂进口登记申请表；（二）委托书和境内代理机构资质证明：境外企业委托其常驻中国代表机构代理登记的，应当提供委托书原件和《外国企业常驻中国代表机构登记证》复印件；委托境内其他机构代理登记的，应当提供委托书原件和代理机构法人营业执照复印件；（三）生产地批准生产、使用的证明，生产地以外其他国家、地区的登记资料，产品推广应用情况；（四）进口饲料的产品名称、组成成分、理化性质、适用范围、使用方法；进口饲料添加剂的产品名称、主要成分、理化性质、产品来源、使用目的、适用范围、使用方法；（五）生产工艺、质量标准、检测方法和检验报告；（六）生产地使用的标签、商标和中文标签式样；（七）微生物产品或者发酵制品，还应当提供权威机构出具的菌株保藏证明。向中国出口本办法第十三条规定的饲料、饲料添加剂的，还应当提交以下申请资料：（一）有效组分的化学结构鉴定报告或动物、植物、微生物的分类鉴定报告；（二）农业部指定的试验机构出具的产品有效性评价试验报告、安全性评价试验报告（包括靶动物耐受性评价报告、毒理学安全评价报告、代谢和残留评价报告等）；申请饲料添加剂进口登记的，还应当提供该饲料添加剂在养殖产品中的残留可能对人体健康造成影响的分析评价报告；（三）稳定性试验报告、环境影响报告；（四）在饲料产品中有最高限量要求的，还应当提供最高限量值和有效组分在饲料产品中的检测方法。**第八条** 产品样品应当符合以下要求：（一）每个产品提供3个批次、每个批次2份的样品，每份样品不少于检测需要量的5倍；（二）必要时提供相关的标准品或者化学对照品。**第九条** 农业部自受理申请之日起 10个工作日内对申请资料进行审查；审查合格的，通知申请人将样品交由农业部指定的检验机构进行复核检测。**第十条** 复核检测包括质量标准复核和样品检测。检测方法有国家标准和行业标准的，优先采用国家标准或者行业标准；没有国家标准和行业标准的，采用申请人提供的检测方法；必要时，检验机构可以根据实际情况对检测方法进行调整。检验机构应当在 3个月内完成复核检测工作，并将复核检测报告报送农业部，同时抄送申请人。**第十一条** 境外企业对复核检测结果有异议的，应当自收到复核检测报告之日起15个工作日内申请复检。**第十二条** 复核检测合格的，农业部在10个工作日内核发饲料、饲料添加剂进口登记证，并予以公告。**第十三条** 申请进口登记的饲料、饲料添加剂有下列情形之一的，由农业部依照新饲料、新饲料添加剂的评审程序组织评审：（一）向中国出口中国境内尚未使用但生产地已经批准生产和使用的饲料、饲料添加剂的；（二）饲料添加剂扩大适用范围的；（三）饲料添加剂含量规格低于饲料添加剂安全使用规范要求的，但由饲料添加剂与载体或者稀释剂按照一定比例配制的除外；（四）饲料添加剂生产工艺发生重大变化的；（五）农业部已核发新饲料、新饲料添加剂证书的产品，自获证之日起超过3年未投入生产的；（六）存在质量安全风险的其他情形。**第十四条** 饲料、饲料添加剂进口登记证有效期为5年。饲料、饲料添加剂进口登记证有效期满需要继续向中国出口饲料、饲料添加剂的，应当在有效期届满6个月前申请续展。**第十五条** 申请续展应当提供以下资料：（一）进口饲料、饲料添加剂续展登记申请表；（二）进口登记证复印件；（三）委托书和境内代理机构资质证明；（四）生产地批准生产、使用的证明；（五）质量标准、检测方法和检验报告；（六）生产地使用的标签、商标和中文标签式样。**第十六条** 有下列情形之一的，申请续展时还应当提交样品进行复核检测：（一）根据相关法律法规、技术规范，需要对产品质量安全检测项目进行调整的；（二）产品检测方法发生改变的；（三）监督抽查中有不合格记录的。**第十七条** 进口登记证有效期内，进口饲料、饲料添加剂的生产场所迁址，或者产品质量标准、生产工艺、适用范围等发生变化的，应当重新申请登记。**第十八条** 进口饲料、饲料添加剂在进口登记证有效期内有下列情形之一的，应当申请变更登记：（一）产品的中文或外文商品名称改变的；（二）申请企业名称改变的；（三）生产厂家名称改变的；（四）生产地址名称改变的。**第十九条** 申请变更登记应当提供以下资料：（一）进口饲料、饲料添加剂变更登记申请表；（二）委托书和境内代理机构资质证明；（三）进口登记证原件；（四）变更说明及相关证明文件。农业部在受理变更登记申请后 10个工作日内作出是否准予变更的决定。**第二十条** 从事进口饲料、饲料添加剂登记工作的相关单位和人员，应当对申请人提交的需要保密的技术资料保密。**第二十一条** 境外企业应当依法在中国境内设立销售机构或者委托符合条件的中国境内代理机构销售进口饲料、饲料添加剂。境外企业不得直接在中国境内销售进口饲料、饲料添加剂。**第二十二条** 境外企业应当在取得饲料、饲料添加剂进口登记证之日起6个月内，在中国境内设立销售机构或者委托销售代理机构并报农业部备案。前款规定的销售机构或者销售代理机构发生变更的，应当在1个月内报农业部重新备案。**第二十三条** 进口饲料、饲料添加剂应当包装，包装应当符合中国有关安全、卫生的规定，并附具符合规定的中文标签。**第二十四条** 进口饲料、饲料添加剂在使用过程中被证实对养殖动物、人体健康或环境有害的，由农业部公告禁用并撤销进口登记证。饲料、饲料添加剂进口登记证有效期内，生产地禁止使用该饲料、饲料添加剂产品或者撤销其生产、使用许可的，境外企业应当立即向农业部报告，由农业部撤销进口登记证并公告。**第二十五条** 境外企业发现其向中国出口的饲料、饲料添加剂对养殖动物、人体健康有害或者存在其他安全隐患的，应当立即通知其在中国境内的销售机构或者销售代理机构，并向农业部报告。境外企业在中国境内的销售机构或者销售代理机构应当主动召回前款规定的产品，记录召回情况，并向销售地饲料管理部门报告。召回的产品应当在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饲料管理部门监督下予以无害化处理或者销毁。**第二十六条** 农业部和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饲料管理部门，应当根据需要定期或者不定期组织实施进口饲料、饲料添加剂监督抽查；进口饲料、饲料添加剂监督抽查检测工作由农业部或者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饲料管理部门指定的具有相应技术条件的机构承担。进口饲料、饲料添加剂监督抽查检测，依据进口登记过程中复核检测确定的质量标准进行。**第二十七条** 农业部和省级人民政府饲料管理部门应当及时公布监督抽查结果，并可以公布具有不良记录的境外企业及其销售机构、销售代理机构名单。**第二十八条** 从事进口饲料、饲料添加剂登记工作的相关人员，不履行本办法规定的职责或者滥用职权、玩忽职守、徇私舞弊的，依法给予处分；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第二十九条** 提供虚假资料、样品或者采取其他欺骗手段申请进口登记的，农业部对该申请不予受理或者不予批准，1年内不再受理该境外企业和登记代理机构的进口登记申请。提供虚假资料、样品或者采取其他欺骗方式取得饲料、饲料添加剂进口登记证的，由农业部撤销进口登记证，对登记代理机构处5万元以上10万元以下罚款，3年内不再受理该境外企业和登记代理机构的进口登记申请。**第三十条** 其他违反本办法的行为，依照《饲料和饲料添加剂管理条例》的有关规定处罚。**第三十一条** 本办法自2014年7月1日起施行。农业部2000年8月17日公布、2004年7月1日修订的《进口饲料和饲料添加剂登记管理办法》同时废止。 |